

가 정 통 신 문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 안내



http://www.gaon21.ms.kr/

담당: 생활교육부

교훈 : 성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교무실) 031-365-8200, ☎ (행정실) 031-365-8207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은 사람과 매우 가까운 생명체입니다. 야생 동물이던 동물은 가축 그리고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가까운 이웃으로 여겨집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한국 반려가구는 3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4%, 반려인은 1,262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반려인의 증가에 따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서의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 등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알려드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과 복지 증진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동물들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예방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②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③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④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⑤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 ①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
- ② 동물이 질병 또는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및 필요한 조치
- ③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 ② 고의로 사료,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 ③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
- ④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 금지 등

동물은 그 자체의 습성에 맞게 양육.사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불이 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 3. 25.

시흥가온중학교장[직인 생략]